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03
----------	-----

2017. 10. 24.(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6일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 반영(안 제2조)
- 도로점용료 분할 부과·징수 시 남은 금액 이자 산출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제2항)
-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될 때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여 주민부담 완화(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르고,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맞도록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점용료를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기준을 정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는 이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정함
- 안 제3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도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110%~130%까지 차등 부과된 점용료를 110%로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6.~'17. 9. 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별표 4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③ ~ ⑥ (생략)</p> <p>제4조(점용료의 조정)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u>영 별표 4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점용료의 조정)----- ----- ----- ----- ----- -- <u>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u> -- -----.</p>

관련법령 발취

□ 도로법 시행령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별표 3] <개정 2016. 12. 30.>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어스앵케)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자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자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자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자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자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자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자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자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어스앵케), 압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자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자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자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자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자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자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자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자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p>에 따른 건 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p>							
<p>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p>	<p>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p>	<p>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p>	<p>표시면적 1제곱미터</p>	<p>1일</p>	<p>400</p>	<p>300</p>	<p>150</p>
		<p>그 밖의 것</p>	<p>표시면적 1제곱미터</p>	<p>1년</p>	<p>122,000</p>	<p>81,350</p>	<p>20,700</p>
	<p>돌출간판</p>		<p>표시면적 1제곱미터</p>	<p>1년</p>	<p>58,400</p>	<p>38,950</p>	<p>9,900</p>
	<p>사설안내표지</p>		<p>1개</p>	<p>1년</p>	<p>101,650</p>	<p>67,750</p>	<p>17,250</p>
	<p>현수막</p>	<p>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p>	<p>표시면적 1제곱미터</p>	<p>1일</p>	<p>400</p>	<p>200</p>	<p>50</p>
		<p>그 밖의 용도</p>			<p>400</p>	<p>300</p>	<p>150</p>
	<p>아치</p>	<p>도로횡단</p>	<p>표시면적</p>	<p>1년</p>	<p>244,000</p>	<p>162,700</p>	<p>41,400</p>
		<p>그 밖의 것</p>	<p>1제곱미터</p>		<p>122,000</p>	<p>81,350</p>	<p>20,700</p>

<p>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p>	<p>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p>			<p>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p>			
	<p>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p>	<p>점용면적 1제곱미터</p>	<p>1년</p>	<p>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p>			

<p>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p>	<p>일시 점용한 것</p>	<p>점용면적</p>	<p>1일</p>	<p>400</p>	<p>300</p>	<p>150</p>
	<p>그 밖의 것</p>	<p>1제곱미터</p>	<p>1년</p>	<p>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p>		

<p>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p>	<p>점용면적 1제곱미터</p>	<p>1년</p>	<p>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p>				
--	-------------------	-----------	--------------------------	--	--	--	--

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기존3항에서 4항으로 변경된 사항임>

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참고자료

□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변경 사항

기 준				변 경
<도로법 시행령 별표 4 : 점용료 조정산식>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 상 증가하게 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 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정액 제한 ※ 점용료 조정산식 폐지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때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사항은 없음

○ 작성자

- 균형건설국 도로과장 이 상 권